

2022. 11. 28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	류대창	02-2133-5360
공정경제정책팀장	주재영	02-2133-5362
담당자	박중훈	02-2133-5152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매수 : 5매

서울시 커피·치킨 가맹본부에 필수구매품목 합리화 요구...21개업체 개선 완료

- 서울 내 가맹점 40곳 이상 운영 중 중대형 가맹본부 30개 대상 정보공개서 분석
- 일회용품과 공산품 등 시중 구매가능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등록한 가맹본부 많아
- (부적합 물품 조치 부문) 시, 가맹본부에 필수품목 조정 제안해 21개 본부 부적합 물품 일부 제외 조치 완료
- (정보공개 부문)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기재 누락, 설명 미흡했던 9개 본부는 자료 보완
- 올해 말까지 5개 외식분야 가맹점 대상 현장 실태조사 실시, 제도개선책 마련

커피 가맹본부 A사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이 본사나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납품받아야 하는 50여종의 필수품목이 명시되어 있다. 이 중에는 주된 상품인 ‘커피’의 품질과 관계없으며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고무장갑, 휴지통 등은 물론 오븐, 냉장고 등 공산품도 포함돼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정한 필수품목들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 품목에 대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. 이에 서울시는 일부 품목에 대한 지정 제외를 요청했고 본부 측은 이를 받아 들여 품목 일부를 ‘필수’가 아닌 ‘권유’ 등으로 바꾸거나 아예 삭제했다.

<서울 내 가맹점 40곳 이상 운영 중 중대형 가맹본부 30개 대상 정보공개서 분석>

- 서울시가 ‘치킨’, ‘커피’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‘필수품목’이 가맹사업법 규정에 부합한 지를 조사한 결과,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‘필수품목’으로 지정한 본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본부들도 있었다.
- ‘필수품목’이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로, 정보공개서에 품목을 명시하고있다.

※ 필수품목(「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2)
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물품으로,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- ① 상품, 용역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
-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
- ③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

- 서울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, ‘필수품목’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, 품목 합리화를 통한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.
- 조사대상은 커피,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(서울시 등록) 중 서울 내 운영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·대형업체 30개다. 조사는 시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.

-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점 영업조건, 매출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로 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.

<시, 가맹본부에 필수품목 조정 제안해 21개 본부 부적합 물품 제외 조치 완료>

- 조사 결과 30개 중 29개 본부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 등이 ‘필수품목’에 포함되어 있었다.
 - 맛과 품질 일관성 유지와 관련 없는 냅킨,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과 고무장갑, 행주, 진동벨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이 다수다.
- 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·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고,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.
 - 시는 관련법령(「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2) 및 구체적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지정 품목에 대해 품목지정 변경을 제안했다.
- 특히,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‘식용유’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하였다.
- ‘필수품목’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.

<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기재 누락 및 설명 미흡한 9개 가맹본부는 보완 완료>

- 또 정보공개서에 ‘필수품목’ 내역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, 정보공개서 수정을 완료했다.
- 필수품목은 「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고, 중요사항 미기재시 정보공개서 보완(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) 을 요구할 수 있다.

※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(소매업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 가능)을 기재하여야한다.(동법 시행령 별표1. 정보공개서 기재사항)

<올해 말까지 5개 외식분야 가맹점 대상 현장 실태조사 실시, 제도개선책 마련>

- 아울러 시는 ‘필수물품’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.
-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,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. 또한 필요시엔 법령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다.
-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“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치킨·커피 업종 필수품목 지정 제외 주요 품목

붙임1

치킨 · 커피 업종 필수품목 지정 제외 주요 품목

업종	연번	영업표지	필수품목 지정 제외	부실기재 보완
			주요품목	주요내용
치킨	1	○○치킨	포스기계, 나초	
	2	○○치킨	라텍스장갑, 튀김기필터, 유산지 등 14개	
	3	○○치킨	보온팩, 치밥	
	4	○○치킨	손질먹태	
	5	○○치킨	없음	
	6	○○치킨	없음	
	7	○○치킨	물티슈, 네프킨	
	8	○○치킨	없음	
	9	○○치킨	주방용품 전체 및 냉난방기, 물티슈, 앞치마 등	
	10	○○치킨	전용유 , 포스기계 등 3개	내용이 누락된 30개 품목 추가 기재
	11	○○치킨	주방용품 전체 및 소금, 유산지 등 31개	내용이 누락된 25개 품목 추가 기재
	12	○○치킨	물티슈, 젓가락, 사이다 등 47개	내용이 누락된 145개 품목 추가 기재
	13	○○치킨	없음	내용이 누락된 596개 품목 추가 기재
	14	○○치킨	냉장고, 씹크대, 작업대, 그릴러 등 21개	473개 품목에 대한 규격을 기재
	15	○○치킨	포스기계	
커피	1	○○커피	전자저울, 얼그레이티, 제빙기, 물티슈 등 39개	중복기재된 200여개 품목 정리
	2	○○커피	없음	내용이 누락된 10개 품목 추가 기재
	3	○○커피	야외의자,야외테이블,고무장갑 등 51개	
	4	○○커피	설비 전부, 커피머신, 우유 등 89개	
	5	○○커피	없음	
	6	○○커피	헛개차, 더치제조용 파우치 등 11개	설비내용이 누락된 14개 품목 구체적 기재
	7	○○커피	원재료(31개), 주방집기 전체(40개) 및 설비(7개) 총 78개	
	8	○○커피	포스기계, 커피머신, 냉동고, 냉장고 등 71개	
	9	○○커피	허니시럽, 스트로우 등 9개	
	10	○○커피	자몽농축액, 연유, 탄산수 등 12개	내용이 누락된 58개 품목 구체적 기재
	11	○○커피	없음	
	12	○○커피	우유, 꿀, 테이블, 설비 일부 등 7개	
	13	○○커피	사과, 탄산수, 초, 가운 등 16개	
	14	○○커피	없음	
	15	○○커피	없음	